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1
----------	-----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개정이유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14.12.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14.12.30.)에 따라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사 규정방법을 직제명에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직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위원 중 “경영기획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을 “여성가족정책실장” 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나. 간사명 개정

- 간사를 “교육청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는 교육지원담당관” 에서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변경(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서울특별시와 협의 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3호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서울특별시 조례 제5078호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을 “여성가족정책실장” 으로 한다.

제8조 중 “정책기획담당관” 을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②(생략)</p> <p>③협회의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의 살국장,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u>경영기획실장</u>, <u>여성가족정책관</u>,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구성 한다.</p>	<p>제3조(구성)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 ----- ----- -----<u>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u>, ----- -----</p>
<p>제8조(간사) 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육청은 <u>정책기획담당관</u>, 시는 <u>교육지원담당관</u>이 된다.</p>	<p>제8조(간사) ----- ----- -----<u>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u>, -- <u>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u>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p>

[별첨2]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직제명 변경을 단순 반영하고, 간사를 업무담당으로 기재하는 형식적 절차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행정6급 박정수 (02-3999-376)

### 별첨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 2015.1.1.] [서울특별시조례 제5767호, 2014.12.11., 일부개정]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1.>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3. 미래시정비전·전략 제시, 시정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에 관한 사항
5. 시정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공기업·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0.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2.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규칙 제340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6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3.12.12.>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 보육, 가족, 출산 및 아동,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12.30.>

③ 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8.18.>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규칙 제3404호, 2014.12.30., 일부개정]

**제8조의2(평생교육정책관)** ① 평생교육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④ 생략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2.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진출금에 관한 사항

10.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3.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14.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16.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17.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18.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19.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93호, 2014.12.24., 일부개정]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안전기획관·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참여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1.1.)

②~⑤ 생략

⑥ 참여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및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4.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 시민장학사 운영
6.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8. 혁신교육지구 운영
9.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10. 지역사회 교육단체(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운영·지원
1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3.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14.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추진
15. 교외 소외학생을 위한 서울희망학교
16.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통합서비스 지원
17.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업무 총괄
18.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
19.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 총괄
20.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업무 총괄
21.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업무 총괄
22. 외부장학금
2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업무
24.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에 속하는 사항
25.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총괄 기획 조정
26. 학생 및 교직원 교류 업무 총괄
27. 해외교육 정보수집, 관리
28. 재외동포 교육지원
29. 해외홍보 업무

